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  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③

\_\_\_\_\_보제 \_\_\_\_\_호  
년 월 일

\_\_\_\_\_님

\_\_\_\_\_보건소장

### 입원권고서

귀하는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 [법]이라고 함.) 제6조 규정의 결핵에 감염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.

따라서, 법 제 19조 제 1항(법 제 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기와 같이 입원을 권고합니다.

또한, 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법 제 19조제 3항(법 제 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조치를 실시합니다.

#### 1 입원 의료기관

- (1) 명칭
- (2) 주소지

#### 2 입원해야 하는 기간

년 월 일까지 입원하십시오.

#### 3 입원 기간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#### 4 입원 권고 이유

- (1) 결핵의 만연의 방지하기 위해
- (2) 결핵 증상이 인정되기 때문에

#### 5 기타

귀하는 법 제 22조 제 3항(법 제 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퇴원의 요구가 가능합니다.  
그 결과, 해당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, 또는 해당 감염증 증상의 소실이 확인된  
경우는 법 제 22조 제 1항(법 제 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을 종료합니다.

또한, 법 제 24조 2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 중 귀하가 받은 대우에 대하여  
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담 당: \_\_\_\_\_